



# [교육봉사활동 I · II]

## 교과목 이수 안내

(학부 재학생 기준)



상명대학교교직지원센터  
SANGMYUNG UNIVERSITY TEACHER TRAINING SUPPORT CENTER



# [교육봉사]

## • 교육봉사란?

- ✓ 예비교사의 전문적 지식을 교육적 방법을 통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으로 공공기관(초·중·고 등)에서 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**교육적인 방법(Teaching)**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함



무급 봉사를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하게 유급으로 봉사하는 경우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
(\* 인정범위: 교통비, 교재비 등 순수 실비로 사용하는 경우)

실비 기준: '1일(1회), 2만원'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'활동비' 명목은 금액 상관없이 인정 불가!

# [ 이수기준 ]

- 1 <교육봉사활동I> & <교육봉사활동 II> 과목당 30시간 이상 봉사해야 이수 인정(1학점/과목)
- 2 60시간을 동시에 활동한 경우, '활동일지'와 '확인서'는 30시간씩 나누어 다른 날짜로 제출
- 3 활동 전,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봉사를 시작. 활동 완료 후, '일지/확인서/자기성찰보고서' 제출

# 활동 절차 [ 봉사활동 전 ]

## 신청 방법

**신청** 샘플 → 학사 → 교직 → 교육봉사 → 교육봉사신청

### 입력

- ① 교과목 수강 신청 여부 선택  
: 미신청/교육봉사활동 I/교육봉사활동II
- ② 봉사활동 기관 정보 입력  
: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/시설허가증/사업자등록증 등
- ③ 봉사활동 내용 및 시간 입력  
: 유·무급 여부 입력(\* 유급인 경우, 지급 명목 기재)

### 승인

승인 여부 확인 → 신청 다음날 오후 2시 이후  
: 반드시 '승인(확정)'이 된 이후에 봉사활동 시행

\* 2025학년도 이전에 활동한 학생도 반드시 '승인(확정)'을 확인해야 함

## 주의사항

- 1 2025년 3월 이후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직지원센터의 승인(확정)을 얻은 후에 진행해야 함
- 2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후, 활동일지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
- 3 가급적 <교육봉사활동I> → <교육봉사활동II>의 순서로 수강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, 동시 수강 신청 및 이수도 가능함
- 4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며, 확인서에는 일자별로 이수 시간이 표기되어야 함
- 5 교육봉사는 재학 중에 진행된 것만 인정되며,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
- 6 교육봉사는 무급이 원칙이나 기관에서 실비 지급을 하는 경우, 1일(1회) 2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활동비는 인정되지 않음

# 활동 절차 [ 봉사활동 후 ]

##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

- 제출서류**
  - ① 교육봉사활동 일지
  - ② 교육봉사활동 확인서
  - ③ 교육봉사활동 자기성찰보고서(분량: 1~2쪽)
- 제출기간** 학기별 종강 전 주까지(상세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)
- 제출방식** 신청 교과목별 e-campus에 기간 내 상시 제출 가능
- 성적인정** 제출서류를 모두 기준에 따라 제출이 확인되고, 기준에 적합하였을 경우에 성적 'P' 부여

## 주의사항

- 1**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한 활동일지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
- 2**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활동일지에 기관의 직인/날인과 담당자 및 학생 본인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는 서류를 인정하지 않음
- 3** 3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, '교육 목적'의 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

# [교육봉사 인정 활동]

1 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교육활동



**인정불가활동**

: 자율학습 감독, 급식지도, 도서 정리, 교재 제작, 시험지 채점, 아동 안전도우미, 등·하교 시 교통지도, 금연지도 캠페인 등 교육과 무관한 내용 및 아파트 단지 내 야학 모임 등

2 초·중·고·특수학교(학교현장실습 가능 학교이며 교육부 및 시·도 교육청에서 운영 또는 인정하는 기관)에서의 교육활동  
가. 교과목 학습지도/ 나. 특기적성 지도/ 다. 학습 부진아 개별지도(방과후 공부방 등)/ 라. 진로/진학 및 학업 상담지도

3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의 교육활동

\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/허가증(신고증, 확인증 등)이 확인되어야 하고,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 가능함(예: 아동복지센터, 청소년 수련원, 재활센터, 어린이집 등이 해당됨)

▶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시 제출 서류: 비영리기관 허가증(신고증, 확인증 등) 및 고유번호증

4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불가

단, 시·도 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(www.le.or.kr)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교육센터 (성인 대상 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)은 인정 가능함

5 한국장학재단 <대학생 재능봉사 캠프> 인정 가능

\* <대학생 재능봉사 캠프>에 참여하는 학생은 반드시 활동한 기관명과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의 기관명이 일치해야 함

# 서울동행 학습 멘토링 종료에 따른 [안내사항]

## 1. 멘토링 봉사(교육봉사 등) 지속 참여 희망자

- ① 1365 자원봉사포털(<https://www.1365.go.kr>) 활용
- ② 초·중·고등학교, 지역아동센터, 키움센터 등 기관 직접 연락 후 활동

	기관명	사이트	주요내용
1	서울런	<a href="http://slearn.seoul.go.kr">slearn.seoul.go.kr</a>	멘토단 운영
2	1365자원봉사포털	<a href="http://www.1365.go.kr">www.1365.go.kr</a>	전국단위 자원봉사
3	서울특별시교육청	<a href="http://www.sen.go.kr">www.sen.go.kr</a>	서울지역 초·중·고 검색
4	우리동네키움포털	<a href="http://icare.seoul.go.kr">icare.seoul.go.kr</a>	서울지역 센터 검색

※ 온라인 활동은 봉사 인정 불가하며, **대면 활동만 인정 가능**

## 2. 기존 신청한 멘토링 봉사활동 종료 기한

종료일: 2025. 5. 23(금)

## 3. 봉사활동 실적조회 및 인증서 발급

- 실적조회 및 인증서 발급은 지속 운영
- 봉사단증 발급은 종료됨  
\* 2025년 신청자 전원 반려 및 추후 신청 불가 처리 예정



# [교육봉사활동 인정 분야]

프로그램명	세부분야	활동 내용 및 예시
교과목 학습지도	국어/영어/수학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교과별 학습지도</li> <li>-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교과목 지도 및 진로 탐색</li> <li>- 학습 계획 세우기 등 학업과 학습 동기 고취</li> </ul>
방과 후 돌봄 (초등학교 돌봄교실)	숙제 도와주기/ 신체 놀이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초등학생 대상 개별 또는 그룹 단위 숙제 지도</li> <li>- 활동지도 및 보조</li> </ul>
특기적성지도	음악/미술/체육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기적성 및 예·체능 활동 지도 및 활동 보조</li> </ul>
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	자기주도학습/개별 또는 그룹지도/ 문화 체험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부하는 습관 지도 및 학습계획 작성 등 지원</li> </ul>
체험학습 지원	체험활동 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체험활동 준비 및 지원, 지도교사 지원</li> </ul>
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	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</li> </ul>